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1. 11. 22

문교사회위원회

1. 심 사 결 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2일

○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73차 임시회

○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1. 11. 2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교육청 총무과장 이근수)

가. 제 안 사 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47호, 91.3.8)시행으로 종전의 각 시,군 교육청 표창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산하 교육청등 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동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규정한 표창에 관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제(대통령령 제13451호, 91.8.16)에 따른 보조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기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 요 골 자

가. 제명을 "충청북도 교육행정기관 표창조례"로 함.

나. 표창권자를 "교육감"에서 "각 기관장"으로 변경하므로써 표창권자를 확대함.

다. 표창 추천권자에 도 본청의 각 담당관을 추가함.

라. 표창 및 표창추천 대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두는 각 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충청북도 교육감표창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 시행에 따라 시·군 교육청 표창조례가 폐지되고 산하 교육청등 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부표창 규정에 의거 위임 또는 규정한 표창에 관한 각종 사항을 정하고 직제 개편에 따른(대통령령 제13451호)보조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여 표창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소수 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가.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 조례중 개정 조례안 1부.